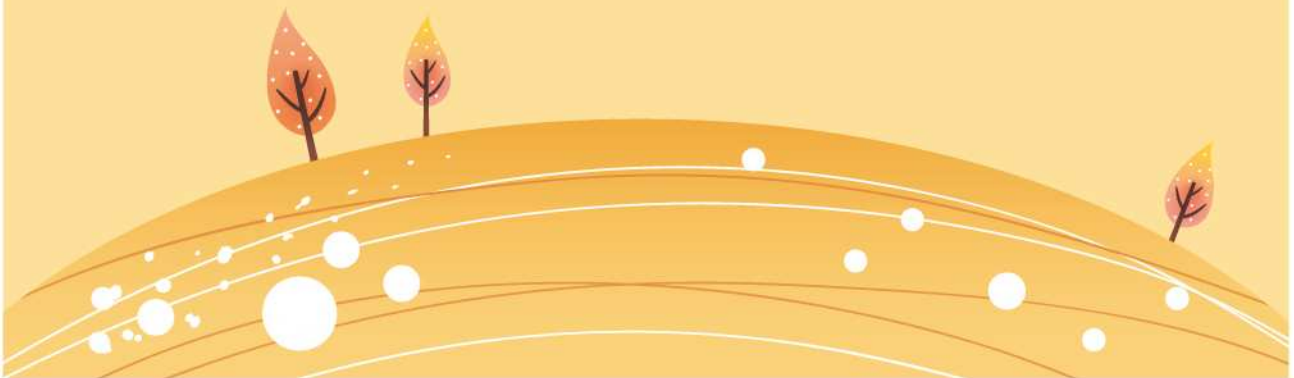


2008 - 교육개발 - 18

2008년 가족상담 전문교육

# 이혼 전후 가족 지원 교육





2008년 가족상담 전문교육

# 이혼 전후 가족 지원 교육



- ❖ 일시 | 2008. 11. 26(수)
- ❖ 장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7층 교육장

## 진행순서

월일	시 간	강 의 명	강 사
11 / 26 (수)	09:30 ~ 10:00	등록 및 개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10:00 ~ 11:00	이혼숙려제도, 그 이후 : 협의이혼 전 상담의 현황과 조망	<b>이현영</b> 판사 (서울가정법원)
	11:00 ~ 12:00	협의이혼 관련 법원실무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위촉 절차	<b>김영권</b> 계장 (서울남부지방법원)
	12:00 ~ 13:00	중 식	-
	13:00 ~ 14:30	이혼 후 부모역할 정립을 위한 자녀양육 합의서 소개	<b>진미정</b> 센터장/교수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대학교)
	14:30 ~ 15:30	협의이혼 전 상담과 건강가정사업의 미래 - 법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의 중요성 - 최근 제작된 홍보물 소개	<b>조성은</b> 총괄사업기획 팀장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15:30 ~ 15:40	휴 식	-
	15:40 ~ 17:10	법원_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 - 법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운영사례 소개 (60분) - 법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 (30분)	<b>김희숙</b> 센터장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b>문정숙</b> 사무국장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17:10 ~ 17:30	서약식 및 폐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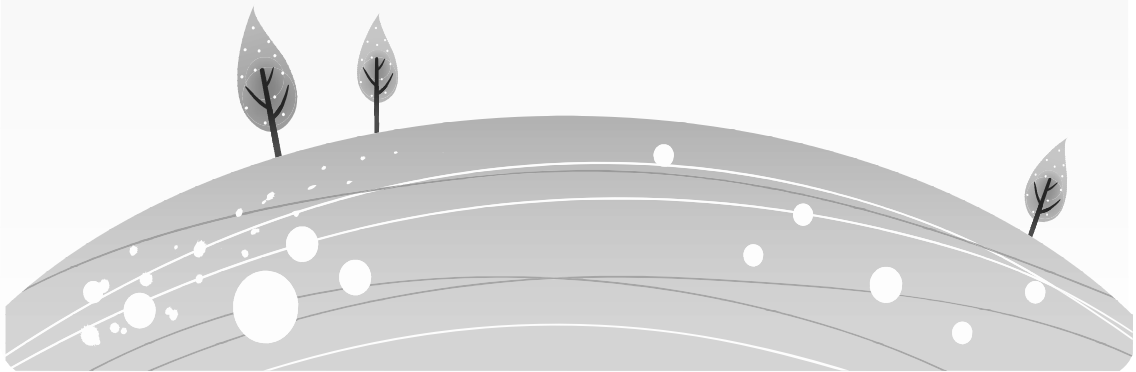
# 목 차

1. 이혼숙려제도, 그 이후 : 협의이혼 전 상담의 현황과 조망 ..... 1  
이 현 영 판사(서울가정법원)
2. 협의이혼 관련 법원실무 ..... 15  
김 영 권 계장(서울남부지방법원)
3. 이혼 후 부모역할 정립을 위한 자녀양육합의서 소개 ..... 27  
진 미 정 센터장/교수(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대학교)
4. 협의이혼 전 상담과 건강가정사업의 미래 ..... 31  
조 성 은 총괄/사업기획 팀장(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5. 법원\_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 ..... 41  
김 희 숙 센터장(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문 정 숙 사무국장(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1. 이혼숙려제도, 그 이후 : 협력이혼 전 상담의 현황과 조망

이 헌 영 판사  
(서울가정법원)



# 이혼숙려제도와 이혼 전 상담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 현 영

- 이 발표문의 운영사례는 서울가정법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법원의 경우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발표문 내용 중 뒷부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분은 서울가정법원의 공식적 입장이 아닌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 숙려기간 도입배경 (사법연감 2008)

**시·구·읍·면에 접수된 혼인 및 이혼신고 건수(표 48)**

연도별 구분	혼 인		이 혼			
	건 수	지 수	협 의	재 판	계	지 수
1998	396,212	100.0	102,442	20,329	122,771	100.0
1999	398,074	100.5	106,624	20,191	126,815	103.3
2000	368,175	92.9	107,902	19,843	127,745	104.1
2001	351,967	88.8	119,005	23,025	142,030	115.7
2002	331,662	83.7	127,749	23,838	151,587	123.5
2003	323,698	81.7	150,993	21,829	172,822	140.8
2004	314,529	79.4	120,648	19,228	139,876	113.9
2005	320,893	81.0	113,134	15,810	128,944	105.0
2006	337,530	85.2	109,860	16,077	125,937	102.6
2007	348,229	87.9	106,886	17,339	124,225	101.2

### 이혼숙려제도와 이혼 전 상담제도의 도입 및 경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04. 12. 27.)에서 이혼숙려제도 및 이혼 전 상담제도 도입 의결 - 2005. 3.부터 실시

- ◎ 2005년 2월까지 - 오전 접수사건 당일 오후 3시, 오후 접수사건 익일 오전 11시(단,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접수사건은 월요일 오전 11시)
- ◎ 2005년 3월 이후 - 1주일 후의 날 오후 3시(상담받은 경우에는 당일 혹은 익일)
- ◎ 2006년 3월 이후 - 3주일 후의 날(상담 받지 않는 경우) 또는 1주일 후의 날(상담 받은 경우) 오후 3시

### 속려기간제도 실시 전후 협의이혼 취하율 변화

년·월	처 리 결 과				확인율	불확인율	취하율	비고
	확인	불확인	취하	계				
2004. 1. 1. ~ 2005. 3. 1.	7,361	111	808	8,280	88.90%	1.34%	9.76%	실시전
2005. 3. 2. ~ 2006. 3. 1.	5,766	79	1,186	7,031	82.01%	1.12%	16.87%	실시후
2006. 3. 2. ~ 2007. 3. 1.	5,788	40	1,451	7,279	79.52%	0.55%	19.93%	실시후
2007. 3. 2. ~ 2008. 3. 1.	5,935	36	1,570	7,541	78.70%	0.48%	20.82%	실시후
2008. 3. 2. ~ 2008. 8. 31.	2,771	24	593	3,388	81.79%	0.71%	17.50%	실시후

### 이혼 전 상담 실시 후 협의이혼 취하율 변화

년 . 월	처 리	처 리 결 과				확인율	불확인율	취하율
		확인	불확인	취하	계			
2005. 3. 2. ~ 2006. 3. 1.	상 담 (25.60%)	1,570	25	205	1800	87.22%	1.39%	11.39%
	비상담 (74.40%)	4,196	54	981	5,231	80.21%	1.03%	18.76%
2006. 3. 2. ~ 2007. 3. 1.	상 담 (20.35%)	1,283	4	195	1,482	86.57%	0.27%	13.15%
	비상담 (79.65%)	4,505	36	1,256	5,797	77.71%	0.62%	21.66%
2007. 3. 2. ~ 2008. 3. 1.	상 담 (10.33%)	638	3	138	779	81.90%	0.39%	17.72%
	비상담 (89.67%)	5,297	33	1,432	6,762	78.34%	0.49%	21.18%
합 계	상담 (18.59%)	3,491	32	538	4,061	85.97%	0.79%	13.25%
	비상담(81.41%)	13,998	123	3,669	17,790	78.69%	0.70%	20.63%

## 상담사건실적

처리 년도	접 수 건 수	상 담 건 수	비 율(%)
2005년 3월~12월	6,075	1,487	24.5
2006년	7,358	1,676	22.8
2007년	7,649	800	10.5
2008년 1월~8월	5,193	491	9.5

## 총래 상담제도의 문제점

- 가. 상담이 숙려기간 단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
- 나. 당사자들이 상담에 대한 동기가 부족
- 다. 상담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간 및 횟수가 제약
- 라. 상담위원의 불성실 - 일정 변경 및 불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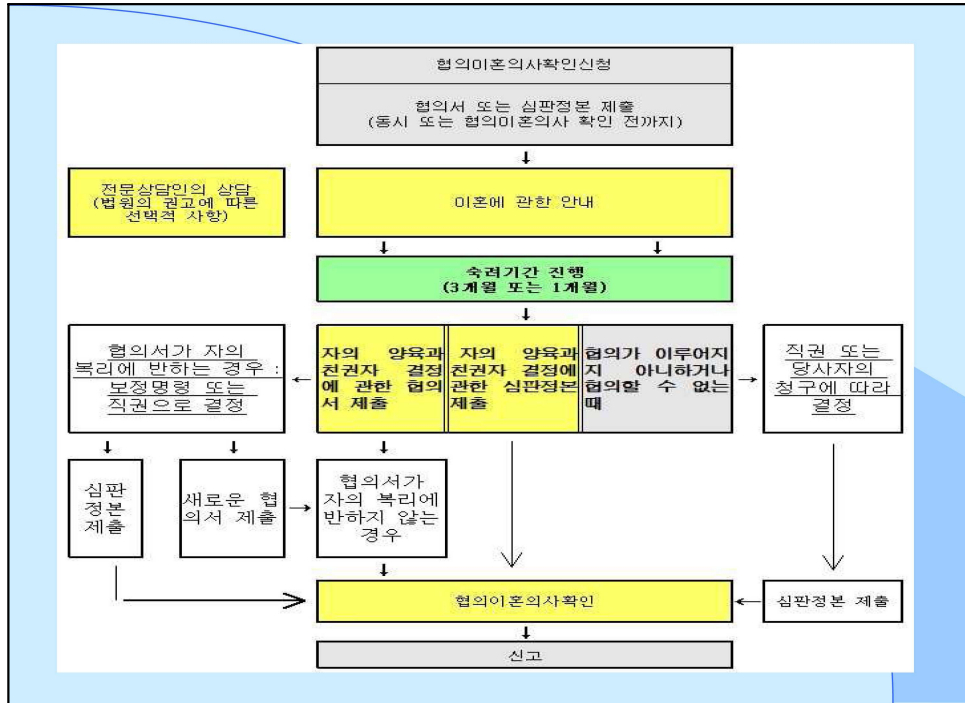
개정 민법(2008. 6. 22. 시행)에 따른 협의이혼 절차

## 기본이념

1. 준비된 이혼
2.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이혼

## 주요내용

- 이혼에 관한 안내 제도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
- 숙려기간 제도  
원칙 :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는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  
단축 또는 면제 : 폭력 등 급박한 사정
- 상담 권고 제도 : 임의적 권고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심판정본) 제출 의무화
  -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 이혼안내

- 협의이혼 안내는 의무적
- 안내방식 -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 공통안내 : 협의이혼절차 전반(대법원에서 제작한 동영상 상영)
  - 부모안내 : 공통안내 + 플래시 동영상 + 전문직 조사관의 부모교육  
(총 30-40분)
- 부모안내는 재판상 이혼 당사자들을 위한 부모교육 시간으로도 활용
- 안내시간
  - 공통안내 11:00, 14:30, 16:00, 17:00, 부모안내 11:00, 16:00

## 숙려기간의 운영

개정법 시행 후 취하율

년·월	치 리 결 과				확인율	불확인율	취하율
	확인	불확인	취하	계			
2008. 7. 24. ~ 2008. 9. 30.	481	2	138	621	77.46	0.33	22.23

숙려기간 단축, 면제신청 건수

년·월	처리	일반상담건수	단축, 면제상담 건수	총상담건수	인용건수
2008. 6. 23. ~ 2008. 9. 30.		6	40	46	28

## 상담권고제도

- 상담제도가 명문으로 도입되었으나, 법원이 상담을 권고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로 도입됨
- 가사소송규칙 개정 - 가사재판, 가사조정 사건에서 법원의 상담권고 가능
- 대법원 예규 제정 -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의 상담에 관한 예규
- 상담내용 (대법원 예규)
  - ① 미성년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 ② 당사자들의 가정 그 밖의 환경조정
  - ③ 분쟁의 해결을 통한 가정문제의 치유



## 협의서 제출의무화

-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
- 양육비용의 부담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담당판사 1-2차례 보정명령
-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에 불응할 경우 협의이혼의사 불확인

## 확인기일운영

- 전담법관 지정 : 단독판사 2인이 격주로 진행
- 기일지정방법 :  
오전 10시 미성년 자녀 없는 부부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미성년 자녀  
있는 부부(30분에 6건씩 배정)
- 기일운영 :  
당사자의 이혼의사 확인  
협의서 기재 내용 확인  
협의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세세한 부분  
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는 즉석에서 당사자를 설득,  
조정하고, 분쟁이 큰 경우는 기일을 속행하여 협의를 유도.

##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준비 없는 이혼 - 개인의 불행, 자녀의 불행, 분쟁의 계속

형식적 협의, 근시안적 협의

상담실적 저조 - 상담에 대한 동기결여, 거부감  
(상담의무화로 해결될 문제만은 아님)

상담내용의 부실, 상담위원의 불성실

## 개선의 목표 및 방향

숙려기간제도의 본래적 취지 실현

- 준비된 이혼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이혼

준비 없는 이혼을 막고, 이혼 협의를 내실화

상담가, 상담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

## 구체적 방안

- 상담가의 조기개입 방안 마련
- 지역에서의 상담역량 강화  
찾아가는 상담  
한 번 걸러서 보냄  
법원의 부담 경감 - 충실한 심리, 당사자의 만족도 증가

## 구체적 방안 - 상담의 충실화

### 1. 상담내용의 차별화

#### 가. 대상에 따른 차별화

자녀 없는 부부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	자녀가 성년인 부부	노부부
혼인기간 단기	사춘기 이전	경제 독립	
혼인기간 장기	사춘기 이후	경제 의존	

#### 나. 갈등단계에 따른 차별화

갈등시작단계	이혼결심단계	이혼신청단계	숙려기간진행 단계
--------	--------	--------	-----------

### 2. 상담가의 전문성 강화

- 분야별 전문성 강화
- 분야간 협력방안 마련
- 일관된 내용 -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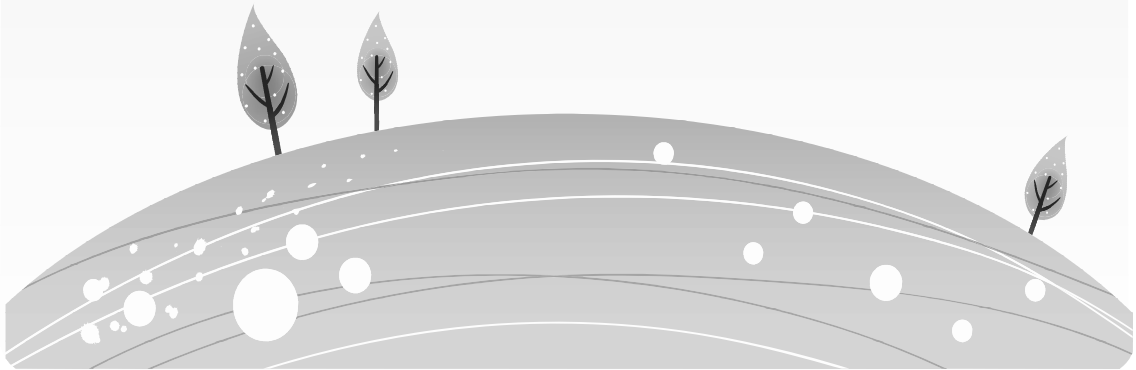
## 구체적 방안

- 법원과 외부 기관과의 연계확보 방안 마련
- 기관간의 상호 Feed Back
- 이혼 이후 상담 및 관리

감사합니다

## 2. 협의이혼 관련 법원실무

김 영 권 계장  
(서울남부지방법원)



---

# 협의 이혼 절차

## 1. 협의이혼이란

## 2. 협의이혼절차

### 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① 신청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②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 ③ 이혼에 관한 안내
- ④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나. 협의이혼의 신고

### 다. 협의이혼의 철회

## 3. 협의이혼의 효과

## 4. 기타

협의이혼상담위원위촉관련

※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항은 본 업무가 아니므로 약식으로 안내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호 서식]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 (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처 ○○○ (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이혼신고서 3통.
3.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제출\_\_\_, 미제출\_\_\_)<sup>1)</sup>
4.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5.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끝.

확인가일		담당자
1회	년 월 일 시	법원주사(보)
2회	년 월 일 시	○○○인

년 월 일

신청인 부 ○ ○ ○ 인

처 ○ ○ ○ 인

○○ 가 정 법 원 귀 중

1) 해당하는 란에 ○ 표기할 것. 협의하는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협의서는 확인가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가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일 자	시 간	인도 장소	면접 장소	기타(면접교섭시 주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매월 ____째 주 ____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input type="checkbox"/> 매주 ____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첨부서류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2.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 (증명)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4.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사본 2통

확인서등본 교부	교부일
부   ○○○      (인)	
처   ○○○      (인)	

협의일자 :        년    월    일

부 :                                   (인/서명)        모 :                                   (인/서명)

○ ○ 가정(지방)법원		관사 확인인
사건번호		
확인일자	. . .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교육비 등의 부담을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이혼의사확인신청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만일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됩니다.
- ※ 만일 협의서에 의해 약정한 사항을 부 또는 모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특히 양육비 부담) '**별도의 재판 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 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부모 사이에 갈등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만 바람직하며 각자의 권리 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자의 특징은 자치능력에 '모가 임신 중인 자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임신 ○개월로 기재함으로 하고, 성별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양육비용의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날짜, 지급액수,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고, 양육하는 부모(양육친)는 비양육친과 자녀를 서로 만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 면접교섭 장소, 면접교섭시 주의사항(가타)란에 기재하거나 별지를 사용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 첨부서류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양육비 지출내역이 필요하므로 이를 진술서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5. 기타 유의사항

협의서원본은 법원에서 1년간만 보존하므로 이혼의사확인 때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은 이혼신고 때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가 그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 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혼당사자	등록기준지							
	주소				주소			
	성명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자				한자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출생연월일					출생연월일		
② 부모 (양부모)	부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모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③기타사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굵은 선)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권자 지정	미성년자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①부	지정효력 발생일 원인	년 월 일	①부	지정효력발 생일 원인	년 월 일	
		②모			②모			
		③부모	① 협의 ② 재판		③부모	① 협의 ② 재판		
⑥ 등록관서 제출자	성명				전화			
	주소				이메일			
					이혼당사자와의 관계		의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실제결혼(동거)생활시작일	년 월 일부터		⑧실제이혼연월일	년 월 일부터	
⑨20세 미만 자녀 수	명		⑩이혼의 종류	①협의이혼 ②재판에 의한 이혼	
⑪이혼 사유(택일)	① 배우자 부정 ② 정신적·육체적 학대 ④ 경제문제 ⑤ 성격차이		③ 가족간 불화 ⑥ 건강문제 ⑦ 기타		
⑫최종 졸업학교	남편	①무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교) ⑥대학원 이상	이상	처	①무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교) ⑥대학원 이상
⑬직업	남편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처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 작성 방법

※ 신고서는 1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에는 3부,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시에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란: 협의이혼신고의 경우에는 기명날인(서명 또는 무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나, 재판상이혼신고의 경우에는 날인(서명 또는 무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혼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란: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이 난에는 양부·양모의 등록기준지·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성명 옆에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 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 ④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성립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⑤란: 협의이혼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할 때에는 “1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2재판”에 “○”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 ⑦란, ⑧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 ⑩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 ⑬란: 결혼할 당시의 직업에 대한 일의종류와 내용을 사업체이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잘못된 예시>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올바른 예시>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구정 건축허가 업무담당, ○○ 상가에서 의류판매, 우리 논에서 농사

## 첨부 서류

-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2. 재판이혼: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정보처리조작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 생략합니다).
- 5. 재판상 이혼신고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신분증명서 사본(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이혼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6.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이혼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한 경우: 출석한 이혼당사자들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당사자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한 이혼당사자 중 한쪽의 신분증명서에 의한 신분확인으로 다른 한쪽의 신분확인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이혼당사자들이 불출석하고 이혼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7.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친권자지정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제6호 서식]

<b>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b>			
사 건 번 호	○ ○ 법 원 20	호	
제1회 확인기일	년	월	일 시
제2회 확인기일	년	월	일 시
담 당	법 원 주 사	○ ○ ○	①

12cm

- \*주의사항**
- ① 당사자 쌍방이 제1회 확인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회 확인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② 제2회 확인기일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③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신속히 심판을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확인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호 서식]

##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20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 :                      로 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혼의사 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을 면제(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사유 : 1.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됨 ( )
2.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음 ( )
3.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 )
4. 신청 당시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민법」 제836조의2제2항의 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 )
5. 기타 (상세히 적을 것)

### 첨 부 서 류

1.

20 . . . . .

위 당사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상대 배우자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9호 서식]

○ ○ 법 원  
확 인 서

20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처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위 당사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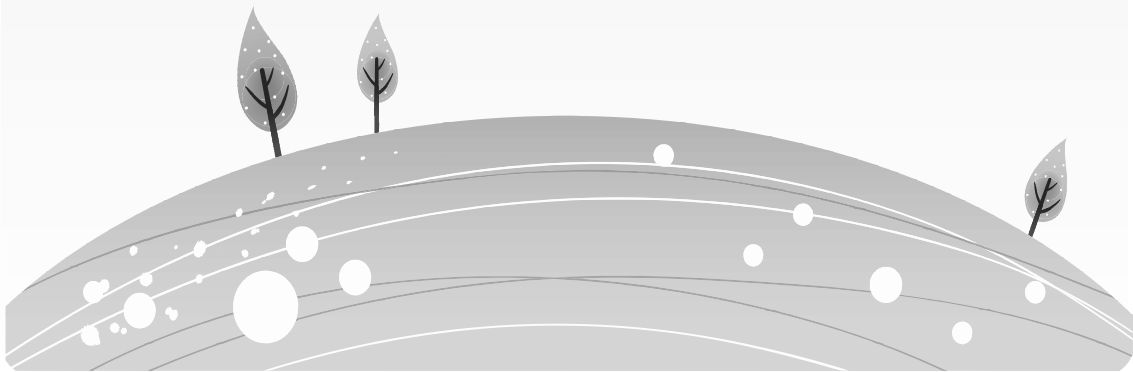
년 월 일

판사

인

### 3. 이혼 후 부모역할 정립을 위한 자녀양육합의서 소개

진 미 정 센터장/교수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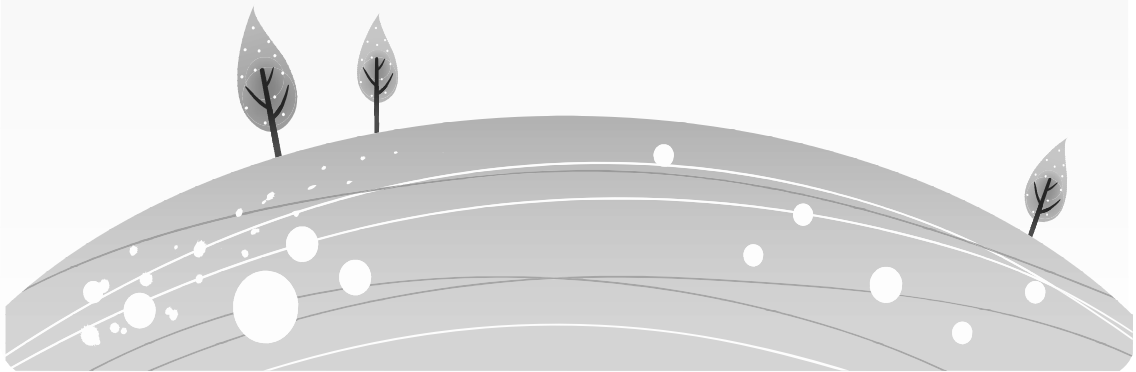
MEMO



MEMO

## 4. 협의이혼 전 상담과 건강가정사업의 미래

조 성 은 총괄/사업기획 팀장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 협의이혼 전 상담과 건강가정사업의 미래

### 1.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혼가족지원의 중요성

- 이혼은 개인에게 있어 살아가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큰 사건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이혼전 가족에 개입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중요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대상, 사업의 단위는 주로 ‘가족’이지만, 그안의 핵심은 ‘부부’로서 건강한 부부관계가 없으면 건강가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부대상의 교육, 문화, 상담을 강조함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편성’, ‘예방성’, ‘전문성’ 이라는 사업의 방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부부문제고 고민할 때 개인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이 사생활 침해라고 느끼지 않는 선에서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특성에 따라 그 가정의 특별한 요구에 맞춘 교육, 문화, 상담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이혼전가정은 가족형태로의 분류는 어려우나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형태 중 하나임

### 2.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혼가족지원에 기대하는 효과

- 개인 발전 가족안정 지속적 사회발전의 병행
- 국가의 거시적 미시적 책무 명시로 적극적인 가족정책 제시
- 국민 개인의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권리와 책임 강조

- 건강한 가정을 위한 민주적이며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역할수행 증대
- 사전예방적 성격의 가족정책 증대 및 사회적 비용의 감소 효과
-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과 지원체계 구축
- 가정의 기능 강화
-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사업 현황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정책을 위한 핵심전달체계로서 짧은 기간 동안 특히 가족상담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특히 성인, 그리고 부부가 부부관계의 불화나 악화, 기타 가족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담형태로 주로 면접상담과 전화상담을, 상담유형으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을, 상담주제별로는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순이다.
- 또 다른 특성으로는 찾아가는 상담, 특히 법원으로 찾아가서 이혼전상담을 실시하므로써 적극적인 문제해결 및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기초하여 주요사업에 있어서 공통(필수) 사업으로 이혼전·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혼 전후 상담

- 이혼을 고려하거나 경험하는 개인, 부부및 가족들로 하여금 보다 만족스런 결혼 및 가족생활양식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에서의 이혼전 상담 실시

- 이혼과정중의 상담을 위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부부대상 법원으로 찾아가는 이혼상담 제공후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 상담등의 서비스 연계
- 이혼 후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및 한부모가족지원
- 특히 예방을 강조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협의이혼이 전체이혼의 87%를 상회하며 또한 이혼부부의 약 68% 정도가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것을 볼 때(오윤자, 2007), 미성년자녀의 복리문제, 이혼피해자 양산 등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이혼 피해 사례유형(조경애, 2006)을 살펴보면 잠시 감정에 휩싸여 이혼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경우, 자녀양육문제, 권리보호 등 이혼후의 문제들에 관해 충분한 고려 내지 지식없이 한 경우, 자녀 양육 책임불분명으로 인한 이혼가정의 불안정성과 미성년 자녀 복리 저해의 경우, 재산권 확보 미리 못한 경우, 상대방 강압이나 순간적 판단 잘못으로 작성된 합의서로 인한 피해의 경우, 협의이혼 청구시 법원에서 자녀와 재산문제를 모두 알아서 다루어 줄 것으로 기대한 경우, 가장이혼으로 인한 피해 경우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혼절차에 제도적 보완을 하므로써 당사자 이혼합의 존중 및 책임을 강화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오윤자, 2007)

##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혼 전후 상담의 효과

이혼전 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4년 3월부터 시작된 이혼전 상담 중 200쌍의 자료를 일부 분석 결과(오윤자, 2007에서 송성자, 2006 재인용)

- 이혼의사유로는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문제 순이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상호간의 충분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 협상방법, 문제해결방법 등의 지식과 기술부족이 더 중요한 영역으로 상담으로 충분한 개입이 가능
- 이혼 이후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자녀문제가 가장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법 모색이 필요

- 이혼전 상담을 통하여 이혼 후의 문제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줌
- 이혼으로 인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부부간 대화에 도움을 줌
- 이혼 후에 대하여 자녀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재적응에 도움이 됨

## 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혼 전후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 이혼전 상담의 필요성을 살펴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전 상담의 필요성(곽배희, 2004, 오윤자 2007에서 재인용)은 첫째, 이혼을 경험한 응답자들 중 이혼을 후회하고 있는 경우에 87.8%, 이혼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61.6%가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법원에서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하였음(1개월~3개월), 그러나 이혼숙려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법원에서의 이혼전 상담건수는 줄어드는 실정이므로, 보다 심도있는 면접상담 진행을 위해 법원에 오는 부부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 필요
- 둘째, 조사대상자의 82.5%가 이혼결정에 관한 정보나 전문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결정하였으며  
 이혼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이혼진행시 감정적으로 힘들어 하는 부분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분노등의 감정이 조절됨으로써 개인적으로 이혼후 적응력이 향상되므로, 법원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중  
 그러나 이혼숙려제도 도입후 이혼전상담을 원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혼을 생각하는 가족에게 접근하기 위한 전략 모색 필요
- 셋째, 배우자와의 합의수준이 매우 낮으며 합의방법이 극히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와 관련되어 구체적인 합의는 경제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음

부모들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고, 이혼후 부모역할 수행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넷째,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인 이혼자들 중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후회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부부의 이혼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 필요

## 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혼 전후 상담 전략



[그림 1] 이혼가족 지원정책

출처 : 김미숙 외(2005).



<그림 1>을 보면, 이혼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자료이면서 동시에 예방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요소들을 탐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의료보건 지원 영역이 추가되어야 심리 정서적 안정에 기초가 되는 신체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법제도 개선 영역에서 숙려기간과 상담의무화가 지적되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지원에서 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고유 업무와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오윤자, 2007)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혼전후 가족지원 사업 주요내용
  - 이혼전 부부관계 진단과 관계증진을 위한 상담
  - 이혼 한부모가족 지원프로그램
  - 한부모 이혼여성 자조모임 운영
  - 재혼가족 지원프로그램
  - 이혼후 자녀양육교육(자녀양육합의서)

##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녀양육합의서 개발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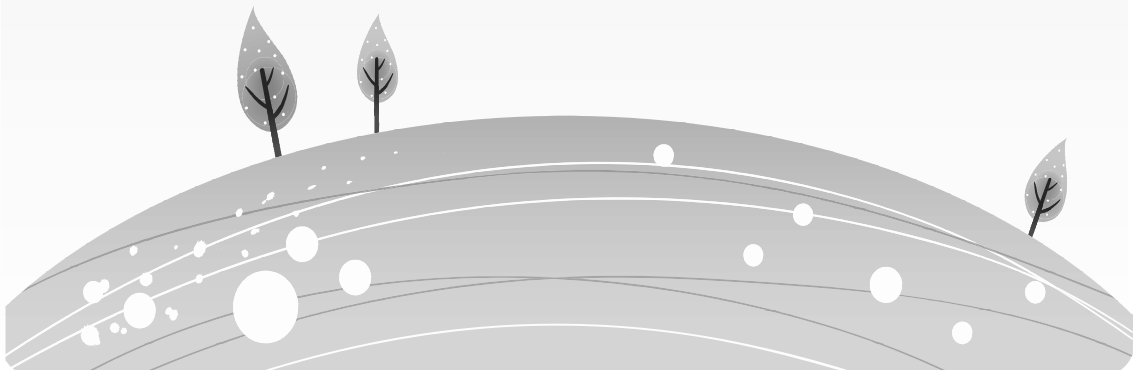
- 이혼전 부부들은 부부문제가 더 심각하여 자녀의 문제를 심사숙고하는데 지나치게 감정적임
-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이혼결정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으로, 부모의 이혼후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며 부모들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음
- 자녀들의 경우 문제행동에 있어 부모들의 이혼이 주요 원인중 하나가 됨
- 이혼전 부모들에게 자녀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고민을 하도록 할 필요있음
- 이혼후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상처를 가장 최소화하고 최선의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이혼후 자녀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부모들에게 인지시켜, 이혼에 대해 보다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제공

- 
- 법원에서 시행중인 자녀양육합의서의 내용을 보다 내실화해서 도와줄 필요 있음
  - 협의이혼전 가족에게 개입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략적 도구 필요  
법원과의 연계, 동영상 제작, 홍보,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의 부부상담 전문성 강화, 이혼전 후 집단 상담 자조모임 운영매뉴얼등의 후속 노력 필요
- ※ 2007 이혼전후 가족상담 심포지엄 이혼전후 가족상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집 중 오윤자 원고 일부 발췌

# 5. 법원\_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

- 운영사례 소개 ①

김 희 숙 센터장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http://gunsanfc.familynet.or.kr>

## 법원 - 센터 연계운영사례소개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희숙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01. 법원연계 방법
02. 연계 후 운영현황- 협의이혼
03. 연계 후 운영현황- 재판이혼
04. 운영성과
05. 활성화방안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법원 - 군산시센터 연계방법

- \* 지역네트워크와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활성화
- \* 군산지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군산교도소, 군산경찰서, 범죠행방협의회 등
- \* 군산지원장의 가사사건에 대한 오픈마인드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연계 후 운영사례 현황-협의이혼

- \* 센터에 방문상담 권유로 부부상담, 가족상담 받은 사례
  - 10쌍의 부부가 협의이혼신청하고 조정을 통해 8가정이 이혼보류 하였으며 2가정이 이혼 취소함.
- \* 최소3회기 이상의 부부 및 가족상담 실시와 교육으로 연계.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연계 후 운영사례 현황-재판이혼

- \* 가족상담을 실시한 사례
- \* 부부상담을 실시한 사례
- \* 개인상담을 실시한 사례
- \* 상담진행을 못한 사례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운영 성과

- \* 이혼중재- 화해조정 및 무료대서
- \* 내담자의 양가적 태도와 이혼결정
- \* 상담자 본인의 문제
- \* 가족상담전문기관으로 전문성확보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활성화 방안

- \* 협ий이혼사건과 재판이혼사건을 분류하여 집단으로 운영하는 방법 필요
- \* 지역 내 이혼상담전문가 양성필요  
- 이혼상담 및 이혼중재훈련프로그램이나 전문상담원양성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설치
- \* 이혼에 관한 심리상담과 교육, 법률 및 직업 등 정보제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법원 내 가사담당 판사 인식전환 필수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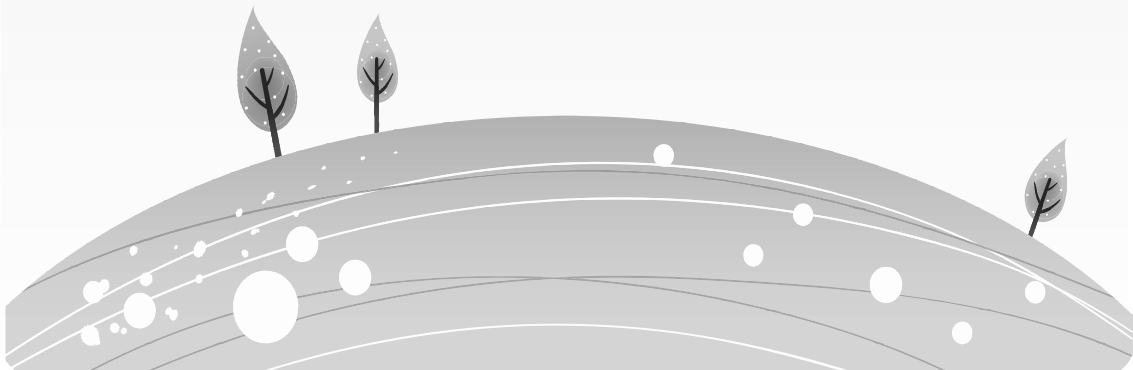
<http://gunsanfc.familynet.or.kr>

감 사 합 니 다

# 5. 법원\_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

- 운영사례 소개 2

문 정 숙 사무국장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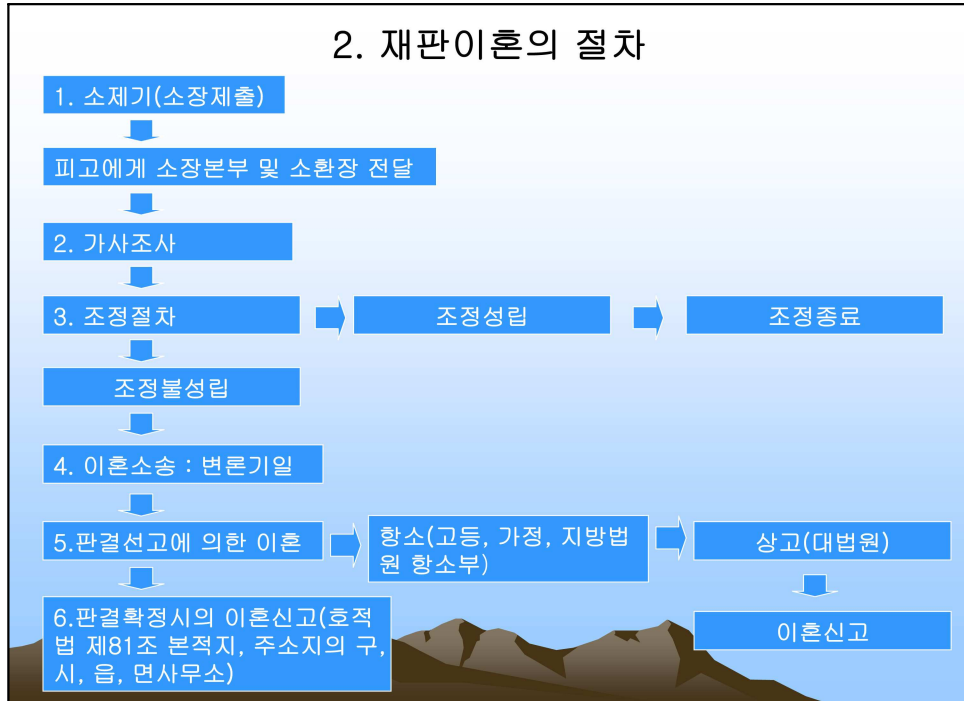
# 법원-센터 이혼상담 연계방안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문정숙

## 1. 위탁기관 선정과정

- 2007. 9. : 청주지방법원 담당판사 면담  
법원-센터 재판이혼 가족상담  
협의
- 2007. 9. : 재판이혼 사건 가족상담의뢰  
접수(2008드단 000 이혼)
- 2007. 10. 29: 상담위탁기관 지정 위촉식  
및 연계기관 간담회
- 2008. 5. 59: 제2차 상담연계기관 간담회

## 2. 재판이혼의 절차



## 3. 재판이혼의 상담 및 치료

- 1) 법원의 후견적 역할: 심리적 조정조치
- 2) 심리적 조정조치
  - 관련규정: 가사소송규칙 제12조
  - 의의: 인간관계 조정기능과 복지적 기능  
쌍방간 대화를 통해 스스로 문제해결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

### 3) 목표

- 혼인 후 부부가 직면한 문제, 혼인생활 중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 상처치유
- 부부갈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자신, 배우자,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변화
- 이혼 후 자녀양육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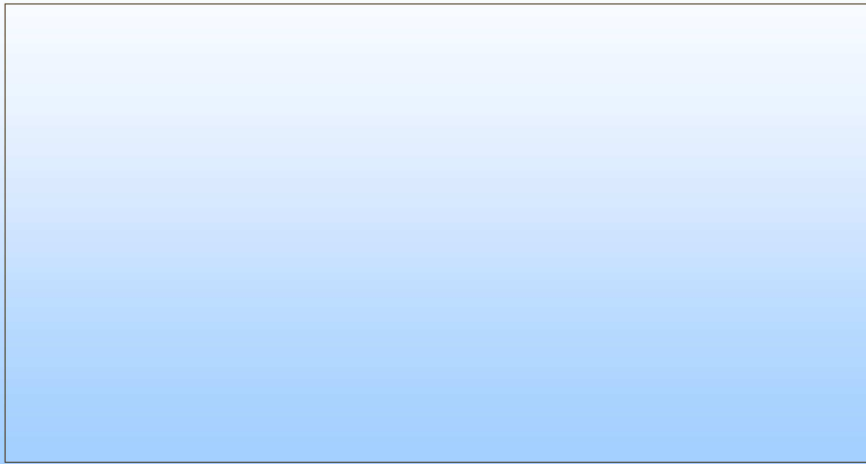
### 4) 주체

- 가사조사관
- 지역사회 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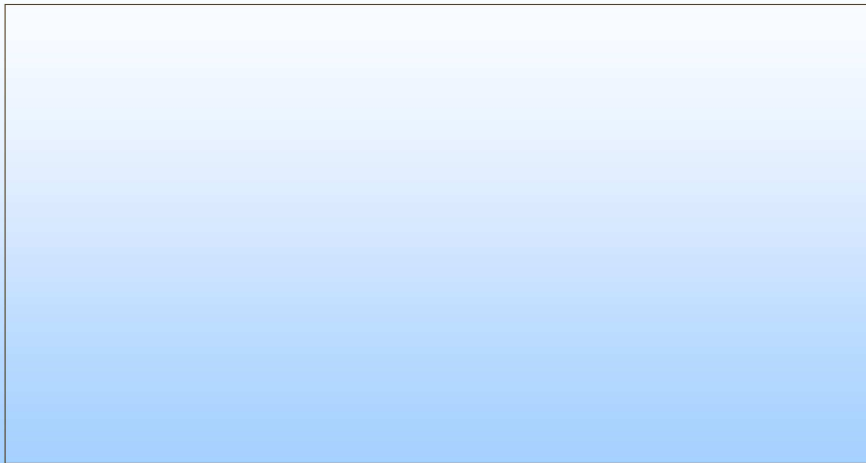
### 5) 절차

- 재판장의 사건분류 또는 조기 1회 기일 진행
- 재판장의 사건분류 또는 조기1회 기일 후 조정조치 명령

## 상담위탁기관 지정서



## 조정조치 명령



---

## 가족상담 의뢰



## 상담위탁기관 지정서



## 4. 연계 후 운영현황(1)

접수 번호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건내용	회신 날짜
07-01	2007드단 000	정00	장00	이혼	08.2.19.
07-02	2006드단 0000 (드단 0000)	최00 (반소피고)	연00 (반소원고)	이혼	08. 1.
07-03	2006드단 0000	안00	유00	이혼 및 친권자지정	08.5.28.
07-04	2007드단 0000	최00	장00	이혼	08.5.20.
07-05	2007드합 000 (드합 000)	김00 (반소피고)	한00 (반소원고)	이혼 및 위자료 (이혼취하:재결함)	08.5.17.
07-06	2006드단 0000	강00	최00	이혼	08.4.25.
08-01	2007드단 0000	김00	김00	이혼	08.7.3.
08-02	2008드단 000	정00	연00	이혼	진행 중
08-03	2008드단 0000	이00	신00	이혼	진행중
08-04	2008드단 0000	한00	박00	이혼	진행 중

## 4. 연계 후 성과(2)

- 1) 이혼에 대해 숙고하는 계기
- 2) 부부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문제에 대한 인식
- 3) 상담을 통해 결혼생활을 점검하는 계기

---

## 5. 활성화 방안

- 관할법원의 재판장의 이혼 전,후 상담에 대한 필요성 인식
- 관할법원과의 연계방안 모색
- 이혼 전 상담뿐 아니라 이혼 후 가족상담의 연계
- 재판이혼 과정에서 빠른 대처 요구: 가족상담 의뢰



MEMO





MEMO



MEMO

2008년 가족상담 전문교육

## 2008 이혼 전후 가족 지원 교육

발 행 일 : 2008년 11월 25일

발 행 처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발 행 인 : 정민자

기획□편집 : 김효순□유지선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1 웰빙센터 8층

TEL. 02-3141-9494 FAX. 02-3141-5432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전화 1577-9337

홈 페이지 : [www.familynet.or.kr](http://www.familynet.or.kr)

인 쇄 처 : 중앙기획□인쇄(TEL : 736-2866 ~ 7)

2008-교육개발-18

이 책의 저작권은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홈페이지  
[www.familynet.or.kr](http://www.familynet.or.kr)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전화 1577-9337



보건복지가족부위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HEADQUARTERS FOR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1 웰빙센터 8층  
TEL : 02-3141-9494 FAX : 02-3141-5432